

서울특별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141
----------	------

제출년월일 : 2023년 8월 14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생활악취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 신설(안 제7조)
- 나. 위원회 위원의 해촉 규정 신설(안 제8조)
- 다.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9조 및 제10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8조의 2, 제9조 등
- 나. 예산조치 :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 다.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 (5) 시민협력과(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없음
-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라. 기타

- (1) 입법예고 (2023. 6. 15.~7. 5.) 결과: 의견없음
-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 작성자 :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제영환(☎2133-4254)

서울특별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시장”을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위원회 설치 및 구성)”을 “(생활악취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구성하고”를 “구성하며”로, “공무원과 위촉위원”을 “위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 중”을 “사람 중에서”로, “위촉하되,”를 “위촉하되”로, “없다”를 “없으며,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를 “있다”로 한다.

제6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제11조 및 제12조로 하고,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회피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1년 단위(위촉일부터 기산(起算)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출석률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7.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제6호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적용한다.

1. 위원의 1년 단위 참석대상 회의 개최 횟수가 1회인 경우
2. 잔여임기 1년 미만 등으로 1년 단위 출석률 적용이 어려운 경우
3. 천재지변, 응급상황, 그 밖에 위원회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생활악취업무 담당 팀장이 맡는다.

제12조(중전의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시장의 책무) <u>시장</u>은 생활악취의 효율적인 방지 및 저감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p>	<p>제3조(시장의 책무) <u>서울특별시장</u> (이하 “<u>시장</u>”이라 한다)----- ----- -----.</p>
<p>제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생략)</p> <p>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u>구성</u>하고,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u>공무원</u>과 <u>위촉위원</u> 중에서 호선한다.</p> <p>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u>자 중</u> 시장이 임명 또는 <u>위촉</u>하되,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u>없다</u>.</p> <p>1. 2. (생략)</p> <p>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u>있으며</u>, 보궐위원의 임기는 <u>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u>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p>	<p>제6조(생활악취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구</u> <u>성</u>하며----- ----- <u>위원</u> - -----.</p> <p>③ ----- <u>사람</u> 중에 <u>서</u> ----- <u>위촉</u>하되 ----- ----- ----- <u>없으며</u>, <u>위촉</u>직 <u>위원</u> 중 특정 성별이 <u>위</u> <u>촉</u>직 <u>위원</u> 수의 10분의 6을 초과 <u>하지</u>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p> <p>1. 2. (현행과 같음)</p> <p>④ ----- ----- <u>있</u> <u>다</u>. <u>다만</u>, <u>보궐</u>위원의 임기는 <u>전</u> <u>임</u>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 <u>고</u>, <u>당연</u>직 <u>위원</u>의 임기는 해당</p>

현행	개정안
<p><u>간으로 한다. <단서 신설></u></p> <p>⑤ <u>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u> <u>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생활악</u> <u>취담당팀장이 된다.</u></p> <p><u><신설></u></p>	<p><u>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u></p> <p><u><삭제></u></p> <p><u>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u></p> <p><u>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u> <u>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u> <u>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u> <u>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u> <u>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u> <u>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u> <u>경우</u> <u>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u> <u>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u> <u>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u> <u>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u> <u>감정을 한 경우</u> <u>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u> <u>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u> <u>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u> <p><u>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u> <u>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u> <u>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u> <u>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u> <u>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u></p>

현행	개정안
<p><신설></p>	<p><u>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u> <u>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u></p> <p>③ <u>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u></p> <p>제8조(위원의 해촉) ① <u>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u> 2. <u>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u> 3. <u>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u> 4. <u>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u> 5. <u>회피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u>

현행	개정안
<p><신설></p>	<p>6. 1년 단위(위촉일부터 기산(起算)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출석률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p> <p>7.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p> <p>② 제1항제6호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적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원의 1년 단위 참석대상 회의 개최 횟수가 1회인 경우 2. 잔여임기 1년 미만 등으로 1년 단위 출석률 적용이 어려운 경우 3. 천재지변, 응급상황, 그 밖에 위원회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p>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p> <p>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현행	개정안
<p><u><신설></u></p> <p>제7조 (생략)</p> <p>제8조(준용) (생략)</p> <p><u><신설></u></p>	<p>다.</p> <p><u>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u>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p> <p><u>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생활악취업무 담당 팀장이 맡는다.</u></p> <p><u>제11조 (현행 제7조와 같음)</u></p> <p><u>제12조(준용) ① (현행 제6조 외의 부분과 같음)</u></p> <p><u>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u></p>

서울특별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안은 비용이 발생되지 않는 사항임

4. 작성자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제영환(☎2133-4254)